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2024. 6. 11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이진환 의원 등 12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가 소유 및 관리·운영하는 역사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익시설의 임대, 계약체결 방법·기간·임대료 및 연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~제7조)
- 임차권의 양도, 임차인의 의무·행위 및 제한을 규정함. (안 제8조~제10조)
- 계약 해지 및 변상금 징수·과오납금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11조, 제13조, 제14조)
- 관리의 위탁 및 수익시설의 용도변경을 규정함. (안 제15조, 제1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남양주시는 2022년 진접선(4호선) 개통과 함께 남·북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내선(8호선)의 개통을 앞두고 있음.
- 별내선(8호선)은 진접선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됨. 본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철도 운영과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역사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.